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그린¹⁾ · 성미혜²⁾

¹⁾부산의료원 간호사, ²⁾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건강과학연구소

Influencing Factors on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im, Geu-Rin¹⁾ · Sung, Mi Hae²⁾

¹⁾Staff Nurse, Busan Medical Center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Inje University

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of Emergency Department(ED) nurse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20 ED nurses from Busan.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ly, 2013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and forensic interest ($r=.29, p=.001$), between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and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r=.54, p<.001$), and between forensic experience and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r=.26, p=.004$).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beta=.50, p<.001$) and experience in forensics ($\beta=.24,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and explained 35.9% of the variance. **Conclusion:** To improve forensic experienc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D nurses to increase their indirect experience. Periodic assessment should also be done. Nurses with training assigned to the ED will enhance the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Key words: Emergency departments, Forensic nursing, Awareness, Performa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정보화, 개방화, 산업화, 도시화로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각각 4위, 9위로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또한 각종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로 강력범죄는 2002년에 70,018건에서 2011년 248,24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흉악범죄가 2002년 14,896

건에서 2011년 29,248건으로 증가하였다(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1).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 재판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무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증거 재판주의를 강조하는 등 사법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Jeong, 2007; Son, 2008). 이러한 변화는 의료 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Jo, 2012).

주요어: 응급실, 법의간호학, 역할인지, 수행

Corresponding author: Sung, Mi Hae

Department of Nursing,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Inje University, Bokjiro 75 Gea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 본 연구는 제1저자 김그린의 2014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 수정한 논문임.
투고일: 2014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6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0일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며 그 상황에서 간호사의 책임 중 필수적인 것은 법의학적인 증거수집과 보존이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들은 외상 환자가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에서 증거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존에 힘쓰지 않는다(Peter, 2010).

미국응급간호사협회(Emergency Nurses Association [ENA], 2010)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로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돌봄 뿐 아니라 증거인식, 수집, 보존을 위한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법의학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간호사들에게 법의간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Kent-Wilkinso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법의간호를 공부하고 법의 간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경찰, 성폭행 기관과 피해자, 범죄자와 통합간호 내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하여 법집행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Anderson, 2013).

응급실 간호사가 법적 증거를 정확히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Abdool & Brysiewicz, 2009).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는 사법 환경에 대한 의료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 중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는 Han과 Hong (2012)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수행정도와 Jo (2012)의 법의간호학적 수행정도와 역량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을 뿐,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6개월 이상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해 봄으로써, 향후 응급 간호에서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실무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대해 파악한다.
- 2)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으로 실지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Lee, 2008)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2007)이 개발한 법의학적 경험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학적으로 마음이 끌리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Lee, 2008)로, Kim (2007)이 개발한 법의학적 관심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은 의료 및 법적 논쟁과 관련된 사망, 외상의 예방과 치료, 과학적 조사, 증거수집과 보존, 분석 등에 있어서 간호사의 생물학적, 심리 사회학적 교육과 법의과학의 적용이 혼합된 분야(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IAFN], 2006; Jo, 2012)로, 본 연구에서는 Han과 Hong(2012)이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Han & Hong, 2012)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Han과 Hong (2012)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법의간호사의 역할인 외상을 식별, 평가, 문서화하는 기술과 법적인 시스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간호사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요구가 해결된 후에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의료 증거를 제공하고 법률기관과 합의한다(IAFN, 2013).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법의간호사의 역할을 응급실 간호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응급실 간호사가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ENA, 2010).

법의학 간호사는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들의 역할은 증거를 수집하고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저지하여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기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IAFN, 2013). 법의학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는 성폭행, 대인 관계가 있는 폭력, 방치나 의도적인 상해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훈련된 건강 전문가로부터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Anderson, 2013).

법의응급간호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간호에 법의간호학적 활동을 더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수집 및 보존하는 간호 분야로 정의하였고, 응급실간호사는 피해자들을 간호하면서 상태에 대해 정확한 기록과 법적 소송 시 증언을 위해 상황을 재현할 증거가 될 만한 준비를 갖추므로써 응급실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ENA, 2010).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외의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법의학이나 법의간호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인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법의학이나 법의간호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교육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Han & Hong, 2012).

법의간호사는 폭력의 희생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모든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로서 폭행과 학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이 잠재된 환자를 돌보고 사법제도와 증거물 수집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의학적 증언을 제공하고 법적 권리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IAFN, 2006).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에 대한 지식을 문항별로 조사한 Park (2011)의 연구에서 '흉기에

의한 자상 환자에 대한 처치로 가위로 옷을 자른 후 응급처치를 한다'가 71.1%, '옷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출혈이 심한 부위에 응급처치를 한다'가 15.2%로 나타나 간호사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나 실행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간호학적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İlçe, Yildiz, Baysal, Ozdoğan과 Taş (2010)의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90.9%가 법의학적 상황에 노출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증거보존과 보호에서 충분한 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도 법의학적 경험이 5점 만점에 1.89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범죄나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사람이 법의학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범죄현장의 응급환자의 의복이나 신체에 남아 있을 증거를 사건해결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훼손함으로써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의학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의학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Park, 2011). 미국에서는 법의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 경험과 관련하여 정신, 아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펼치고 있는데(Finn, 2011),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 법의학 관련 관심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이 3.10점으로 대체로 법의학적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법의학 관련 관심도는 외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관심을 알아보는 연구(Roberti, 2004)가 시행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법의학 경제의 관심도에 대한 연구(Boyd & Ireland, 2008)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법의학과 법의간호학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의간호학은 간호학의 새로운 전문분야로 1992년 국제법의간호사연합이 결성된 이래 국제적으로 법의학의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법의 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의 간호사연합에는 24개국 3,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IAFN, 2006). 외국의 경우 법의 간호사는 법적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보건의력으로서 인정받아 성

폭행,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 응급외상을 입은 여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법의교정간호사(Forensic Correctional Nurse), 법의간호상담자(Forensic Legal Nurse Consultant), 성폭력간호검사원(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ANE]), 법의간호사망조사관(Forensic Nurse Death Investigator), 법의정신간호사(Forensic Psychiatric Nurse), 법의임상간호사(Clinical Forensic Nurse), 증언전문가(Expert Medical Witness), 법의간호교육자(Forensic Nurse Educator), 법의노인간호사(Forensic Gerontology Nurse)로서 여러 세부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Martin, 2009).

법의간호학적 수행에서 간호기록은 의료과오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로써 임상간호사들이 기록한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처치 기록지, 간호일지 기록을 제시하였다(Kim & Yi, 2011).

Lee (2006)는 법의학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의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의간호사를 전문 간호영역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Ledray (2010)는 모든 증거물 채취 및 수집 이전에 본인과 증거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도구나 범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은 따로 분리하여 각각의 박스나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는 외상환자를 다루는 첫 번째 간호사로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법의학, 법의간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여 경험을 토대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미흡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으로 외상환자의 법적 증거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Jo (2012)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수행정도는 높은 반면 법의간호학적 지식정도는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작성 하는데 병원 내부의 작성 양식과 그에 대한 일상적인 기록, 응급실 간호사가 갖추고 있는 법의학적 직무인지도나 지식부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는 임상적, 법의학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첫 번째 의료진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건강사정은 물론 법적증거 자료의 수집, 전문적인 법적증언과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법률적, 간호학

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의학적 역할인지와 지식이 없다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법의학적 상황해결의 중요한 증거를 놓치게 될 수 있다(ENA, 2010). 그러므로 간호사는 치료행위 이외에 범죄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법의간호학적, 법에 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학적 관심도 관계에서 Park (2011)은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학 관련 관심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법의학 경험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응급실 간호사는 간호수행이 증거가 되고 관련자가 증인이 되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파악하고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해 봄으로써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여 법적 소송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200명 이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7개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응급실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analysis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변수(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을 95%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119명이 나왔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산출결과보다 많은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5부의 설문지 중 132부(회수율 91.0%)가 회수되었으며 132부 중 기록 누락 등 문제로 12부를 제외하여 120부

(82.7%)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2-10411024 AB-N-01-20130618-HR-002-02)받은 후 해당병원의 간호부나 응급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한 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 후 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항, 법의학적 경험 9문항, 법의학적 관심도 7문항,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24문항,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법의학적 경험

Kim (2007)이 응급 구조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학적 경험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에 있는 동안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1점, '조금 있었다 1~2회' 2점, '보통이다 3~5회' 3점, '많이 있었다 6~9회' 4점, '매우 많았다 10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학적 경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Park(2011)이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 법의학적 관심도

Kim (2007)이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학적 관심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법의학과 관련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Park(2011)이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3)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Han과 Hong (2012)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부요인으로 기록 6문항, 간호활동 2문항, 인식 6문항, 증거보존 7문항, 연락 3 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성폭력 사건이나 폭행, 사망사건 등의 간호기록 시 향후 법적 증언을 요청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외상환자의 경우 상처의 위치, 모양, 크기, 수, 깊이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DOA(Death on arrival)로 도착하는 환자에게 보호자가 말하는 사망시간과 시체 경직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미심쩍은 부분을 인식하여 보고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활동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몸에 특정한 모양을 갖는 멍이나 찰과상이 있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하여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습득한 소지품을 하나씩 지정된 봉투에 담아서 보관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식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부득이하게 의복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칼에 찢린 자국이 남아 있는 곳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서 잘라 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두개강 내 출혈 시 발생기전을 인식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외상성 vs 비외상성)'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증거보존 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위세척 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액 일부를 보관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의사(hanging)로 DOA환자 내원 시, 목땀의 종류 등을 구분하여 보호자들의 진술 내용과 다른 미심쩍은 부분을 인식하여 보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나 폭행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위세척 시 양상을 기록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락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학대의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성폭력 의심자로부터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보존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대체로 필요하다' 3점, '필요하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Han과 Hong (2012)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기록 6문항, 간호활동 2문항, 인식 6문항, 증거보존 7문항, 연락 3 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안 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학적 경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학적 경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0.73±18.98세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 78.3%, 기혼 및 기타가 21.7%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및 기타 55.8%, 불교 24.2%, 기독교 11.7%, 천주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70.8%, 대학교 졸업 17.5%, 석사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현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0.8%, 책임 간호사 4.2%, 수간호사 5%로 일반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71.98±65.25개월로 5년 미만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실 경력은 평균 47.10±35.65개월로 1/2~5년 미만의 응급실 경력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법의 간호사 인지정도는 전혀 모른다가 53.3%, 약간 알고 있다 41.7%, 대부분 알고 있다 3.3%, 정확히 알고 있다 1.7%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2.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법의학적 경험의 평균평점은 2.26±0.87점이며, 법의학적 관심도의 평균평점은 3.40±0.63점으로 나타났다.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정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24±0.3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인 기록이 평균 평점이 3.42±0.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활동 3.33±0.46점, 증거보존 3.18±0.49점, 인식 3.16±0.47점, 연락 3.10±0.52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정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71±0.49점이었으며, 하부요인 기록이 평균 평점이 2.97±0.48점, 간호 활동 2.88±0.52점, 증거보존은 2.63±0.59점, 인식은 2.62±0.60점, 연락은 2.47±0.6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간호학적 역할수행은 순상관관계($r=.26, p=.004$)를 나타냈다.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순상관관계($r=.54, p<.001$)를 나타냈다.

4.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영향요인

응급실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법의학적 경험, 관심도 및 역할의 인지정도를 독립 변수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50으로 자기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208에서 0.907로 0.1 이상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s)	20~29	80	67.5
	30~39	30	25.0
	≥ 40	9	7.5
	Mean±SD	30.73±18.98	
Marital Status	Single	94	78.3
	Married/Etc	26	21.7
Religion	Christianity	14	11.7
	Catholicism	10	8.3
	Buddhism	29	24.2
	None/others	67	55.8
Education	Junior college graduation	85	70.8
	University graduation	21	17.5
	Graduate school graduation	14	11.7
Position	Staff nurse	109	90.8
	Charge nurse	5	4.2
	Head nurse	6	5.0
Clinical experience (years)	<1/2~5	66	55.0
	<5~10	39	32.5
	≥ 10	15	12.5
	Mean±SD	71.98±65.25	
Clinical career in emergency department (years)	<1/2~5	82	68.3
	≥ 5	38	31.7
	Mean±SD	47.10±35.65	
Awareness degree of forensic nurse	Nat at all	64	53.3
	Few	50	41.7
	Mostly	4	3.3
	Confidently	2	1.7

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VIF) 값이 1.102에서 4.813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 변인들이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R^2=.359$, $F=5.500$, $p<.001$)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t=5.858$, $p<.001$)와 법의학적 경험($t=3.00$, $p=.004$)이었으며, 전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총 35.9%이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4점 만점에 각각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의 연락 항목이 평균 3.10점,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연락 항목이 평균 2.4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의 연락 항목이 4점 만점에 평균 3.10점,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연락 항목이 평균 2.13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가 법적사례의 증거물을 수집, 보존하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의료인이나 관할 경찰관 및 기타 법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과 연락하는 법의간호학적

Table 2.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Forensic Experience, Forensic Interest and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N=120)

Variable	Mean ±SD
Forensic experience	2.26 ± 0.87
Forensic interest	3.40 ± 0.63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3.24 ± 0.39
Documentation	3.42 ± 0.41
Nursing care activity	3.33 ± 0.46
Awareness	3.16 ± 0.47
Preservation of evidence	3.18 ± 0.49
Contact	3.10 ± 0.52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2.71 ± 0.49
Documentation	2.97 ± 0.48
Nursing care activity	2.88 ± 0.52
Awareness	2.62 ± 0.60
Preservation of evidence	2.63 ± 0.59
Contact	2.47 ± 0.66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20)

Variable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Forensic experience	Forensic interest
Forensic experience	.07 (.447)		
Forensic interest	.29 (.001)	.02 (.843)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54 (<.001)	.26 (.004)	.17 (.063)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N=120)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273	.434		0.628	.531
Position*	.110	.139	.106	0.791	.430
Age (years)	-.090	.099	-.115	-0.908	.366
Clinical experience in emergency department (month)	-.018	.110	-.018	-0.168	.867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632	.108	.502	5.858	p < .001
Forensic experience	.140	.046	.249	3.006	p < .001
Forensic interest	.036	.065	.046	0.558	.578

Adj R² = .359, F = 5.500, p < .001

역할을 적게 인지하고 수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derson (2013)은 임상 법의간호를 공부하고 법의 간호에 대한 지식 탐험의 경험이 있는 응급 간호사가 아직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경찰, 성폭행 기관과 피해자, 범죄자와 통합간호 내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하여 법정 절차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중 연락으로 연계가 끝까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거

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이 법의학적 증거수집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할 곳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연락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응급 환자를 한꺼번에 간호하는 업무과다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은 사정에 맞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의간호학 교육 과정을 받은 법의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하거나 일반 간호 인력을 보강하여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을 교육시켜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법적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을 안 하거나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해야 할 사람 즉, 다른 의료인이나 관할 경찰관, 기타 법 관련 사람과 신고해야 할 기관 등의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매뉴얼로 만들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2.2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도 법의학적 경험이 5점 만점에 평균 1.89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음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연구가 미흡한데, 영국에서는 법의학 경험과 관련하여 법의학 전문 정신교육 및 훈련까지 연구된 상태이다(Sebastian, 2012). 이에 우리는 조금 더 활발하게 법의학, 법의간호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의학, 법의간호학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 법의학적 경험이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의학적 관심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Gaffney (2005)는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디어를 통해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을 널리 알려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에 대한 인지를 높여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학적 관심도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내, 법의학적 관심도가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법의학적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지침을 만들어 행하게 함으로써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여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Harris (2013)는 법의학, 법의간호학 관련 전문 지식의 격차는 산업 재해 및 사망 등의 외상의 법정 평가에서 사건 해결 방향에 중요한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하였다. Mason, Phipps와 Melling (2011)은 법적인 소송으로 될 수 있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간호사들의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법의 간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와 결부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식에 힘을 쓰고 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반복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법의학적 경험이 높으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의료기관의 환경에 맞게 법의학과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 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기술과 대처 방법이 숙련되어 일의 효율성이 높아져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순으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5.9%로 나타났다. 이는 Jo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간호학적 역량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Jo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간호학적 지식과 태도가 높을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고,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비해 법의간호학적 지식과 태도가 낮은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직무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확고히 하고 법의학적 경험도 높여야한다. 또한, 법

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의간호사 영역 또한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간호계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법의간호학적 역할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법의학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교육과 훈련하는 날을 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법의간호학 책과 임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함께 다루어 주로 접하게 되는 외상환자, 성폭력·학대 피해 의심 환자, DOA환자, 교통사고 환자, 자살의심 환자 등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록, 간호활동, 인지, 증거보존, 연락으로 나누어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면서 함께 주기적으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와 법의학적 경험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이기 하기 위하여 국민, 구체적으로 정계나 법계 입안자, 간호계에 대중매체, 강의 등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교육과 훈련하는 날을 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훈련된 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능률과 효율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을 높여 사법 환경에 대한 의료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학적 경험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응

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이들 변수를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Abdool, N. N., & Brysiewicz, P. (2009). A description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in emergency departments in Durban, South Africa.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35(1), 16-21.
- Anderson, K. (2013). Forensic nursing. *Australian Nursing Journal*, 20(9), 26-28.
- Boyd, D., & Ireland, T. R. (2008). History and search capacities of web sites for legal decisions of interest to forensic economists. *Journal of Legal Economics*, 15(1), 93-104.
- 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10). *Forensic evidence*. Retrieved August 6, 2010, from <http://www.ena.org/SiteCollectionDocuments/Forms/DispForm.aspx?ID=2104>
- Finn, C. (2011). Forensic nurses' experiences of receiving child abuse disclosure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6(4), 252-262.
- Gaffney, D. A. (2005). The power of the press: how one media spark interest in forensic nursing. *Journal of Forensic Nursing*, 1(2), 82-83.
- Han, M. H., & Hong, H. S. (2012). Th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in emergency departm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4(4), 291-299.
- Harris, C. (2013). Occupational injury and fatality investigations: The Application of Forensic Nursing Science. *Journal Forensic Nurse*, 9(4), 193-199.
- Ilçe, A., Yildiz, D., Baysal, G., Ozdoğan, F., & Taş, F. (2010). Analysis of the knowledge and practices of health care workers in emergency department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in forensic cases. *Turkish Journal of Trauma & Emergency Surgery: TJTES*, 16(6), 546-551.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2006, 2008, 2013). *What is forensic Nursing?* Retrieved July 7, 2013, from <http://www.iafn.org/displaycommon.cfm?an=3>
- Jeong, O. S. (2007). A effect that the expert opinion on the forensic Medicine is influenced in the connection with court-oriented trials.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19(2), 283-230.
- Jo, N. Y. (2012). *Forensic-nursing performance and competency levels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ent-Wilkinson, A.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forensic nursing education in North America: constructed definitions of forensic nursing. *Journal of Forensic Nursing*, 5(4), 201-211.
- Kim, B. Y. (2007).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E. Y., & Yi, Y. J. (2011). Effects on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clinical nursing of education on nursing recording focusing on legal aspec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3), 277-283.
- Ledray, L. (2010). Expanding evidence collection time: Is it time to move beyond the 72-hour rule? How do we decide? *Journal of Forensic Nursing*, 6, 47-50.
- Lee, K. M. (2008). *Foransic medicine*. Seoul: Doosan Dong-A.
- Lee, K. R. (2006). *Application of forensic nursing into Korea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Martin, N. (2009). Forensic nursing: What, Who, Where. *Kansas Nurse*, 84(3), 3-5.
- Mason, T., Phipps, D., & Melling, K. (2011). Forensic learning disability nursing role analysi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9(2), 121-129.
- Park, E. M. (2011). *Knowledge, experience and interest on forensic medicine of nurses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eter, M. L. (2010). The older adul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ging and atypical illness presentation.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36(1), 29-34.
- Roberti, J. W. (200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undergraduates with career interests in forensic identifica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1(3), 117-125.
- Sebastian, L. (2012). Specialist training in forensic psychiatry: the UK experience. *Criminal Behaviour & Mental Health*, 22(4), 252-256.
- Son, D. K. (2008). Der verhandlungsgrundsatz vor gericht und die entwicklungsrichtung der ermittlungstatigkeiten.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0, 81-110.
- Statistics Korea Data. (2012, April 30). *Causes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September 24, 2013, from <http://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54&inputYear=2012>
-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1). *2011 Crime analysis*. Seoul: Author.